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6. 11 선고 2020가단627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심정훈, 조세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

담당변호사 양진영, 김용명, 김경돈

변 론 종 결 2021. 5. 14.

판 결 선 고 2021. 6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8. 4. 30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. 5. 14. 접수 제22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1)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고 한다)은 주식회사 E(이하 'E'라고 한다)와 KCC시스템창호 및 유리거래계약을 체결하고, 원고와 사이에 위 거래약정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7. 6. 23.경 피보험자를 E, 보험가입금액을 50,000,000원, 보험기간을 2017. 6. 21.부터 2018. 6. 20.까지로 하는 이행(상품판매대금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2)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의 대표자인 C은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3) E는 2019. 7. 26.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19. 8. 9. E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,000,000원을 지급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권채권을 취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구상금채권'이라고 한다).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

1)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1988. 1. 19. 피고 명의로 1988. 1. 1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. 8. 3. C 명의로 1995. 6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,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1995. 11. 13.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.

2)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. 5. 14. 피고 명의로 피고와 C 사이의 2018. 4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(이하 2018. 4. 30.자 매매계약을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

하고,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‘이 사건
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1) 원고

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, 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, C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

① 피보전채권 관련 주장

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권리가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.

② 사해행위 관련 주장(명의신탁)

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나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, 실질적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

1) 관련법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나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

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).

2) 이 사건의 경우

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,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행(상품판매대금)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있었으므로, C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다.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

1) 관련법리

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이하 ‘부동산실명법’이라 한다)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,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,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. 또한,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, 여기서의 ‘제3자’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,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의 경우

을 제3 내지 9, 13,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.

① 피고는 1988. 1. 15.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. 8. 3.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

② 피고는 1959. 7.생, C은 1972. 1.생으로, 형제관계에 있는데,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5년경 C은 불과 만 21세로, 대학과 병역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③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현지 거주민이 아니면 대출이 곤란하다고 하여 C이 피고 대신 이 사건 토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며,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도 C 명의로 마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,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F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숙희

목 록

1. 충주시 G 대 446㎡

2. 충주시 G 지상

[도로명주소]충주시 H

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71.65㎡, 끝.